2026년 2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Macro Alert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

Econom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행정부의 실효관세율은 기존과 유사하거나 낮아질 가능성에 무게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의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찬성 6, 반대 3)하면서 상호관세와 펜타닐·불법이민 관세의 효력이 상실됐다. 대법원 판결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 122조에 의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서명했고(2/24부터 효력), 이튿날 SNS를 통해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제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적용 기간이 150일로 한정되며, IEEPA 위법 판결 이전 대비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소폭 낮아지기 때문에(약 1.5%p~3%p로 추정) 금번 정책으로 인한 충격은 제한적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를 준비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까지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과의 차이점은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불공정 무역을 사유로 특정국,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이다. USTR 대표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301조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해 세부 사항을 며칠 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겠지만,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실효관세율은 기존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디스인플레이션 가속화는 기대난. 다만 누군가는 얻을 수 있는 이득

고율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다. 뉴욕연은은 관세 귀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2025년 관세의 90% 이상을 해외 수출업자가 아닌 미국 소비자와 수입업자가 부담했다고 보고했으며,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급망 재편도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수입업자에서 소비자로 전가되는 과정은 느리고 복잡해 구체적인 전가율 파악이 어렵지만, NBER 연구자료는 대형 소매업체의 일별 온라인 소매가격을 이용해 지난해 관세의 단기(6개월 후) 소매가격 전가율을 약 14%~20%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실효관세율이 낮아지면 물가 압력도 줄어들 수 있을까? 가격 경직성을 고려할 때 관세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이미 높인 가격을 다시 낮출 확률은 적다. 단기간에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관세 비용이 줄어들수록 수입가격은 낮아지므로 생산자의 마진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기업, 더 나아가 내수 중심의 미국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

미국의 중장기 재정 우려는 안고 가야 할 문제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를 높이는 요소다. 당장 IEEPA의 관세 기여도가 높았던 만큼 관세 체제를 무역법 위주로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서 재정수입이 종전보다 줄어들 공산이 크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기 징수한 관세수입의 환급 이슈다.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하급심법원(국제무역법원)으로 환송하면서 환급 대상, 금액, 적용 시점 등 구체적인 환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세부 계획 마련까지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CBP는 2025년 12월 14일까지 징수한 IEEPA 관세 수입이 1,335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던 바 있고, 올해 1월까지 누적 IEEPA 관세 수입은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관세 수입 중 IEEPA 관세 수입 비중은 약 52% 수준이다(Penn-Wharton Budget Model 기준). CBP가 이를 일괄적으로 환급해줄지, 혹은 개별 소송을 통해 환급이 가능할지에 따라 회수금과 기간이 달라질 텐데, 환급 속도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중장기적인 위험은 상존한다.

도표 1. 미국 재무부 관세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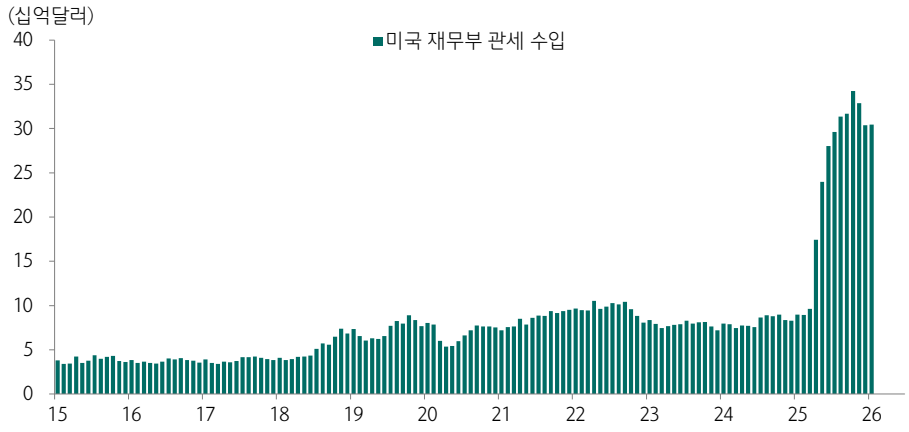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2025년 관세는 대부분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해

2025년 시기별 평균	해외 수출업자의 관세 부담(%)	미국 수입업자의 관세 부담(%)
1월-8월	6	94
9월-10월	8	92
11월	14	86

자료: NY Fed, 하나증권

도표 3. 트럼프 관세 부과 이후 온라인 소매가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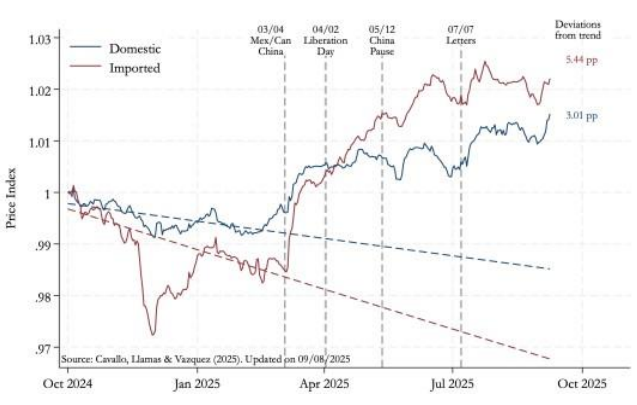

자료: Cavallo, Llamas, Vazquez(2025), 하나증권

도표 4. IEEPA 관세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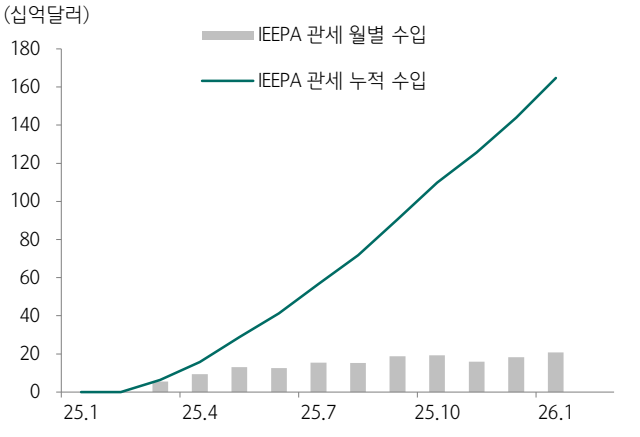

자료: Penn Wharton Budget Model, 하나증권

도표 5. 전체 관세 수입 중 IEEPA 관세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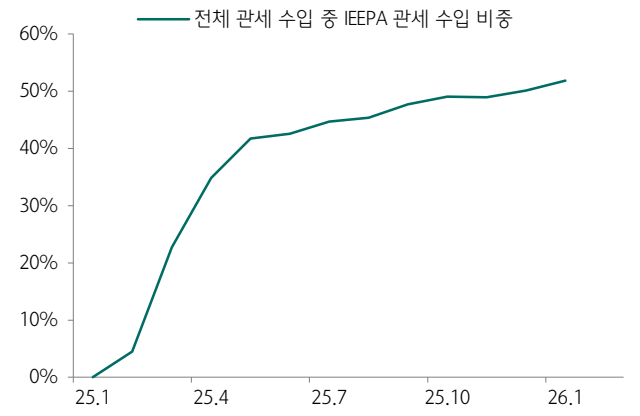

자료: Penn Wharton Budget Model, 하나증권

도표 6. IEEPA 관세 수입의 국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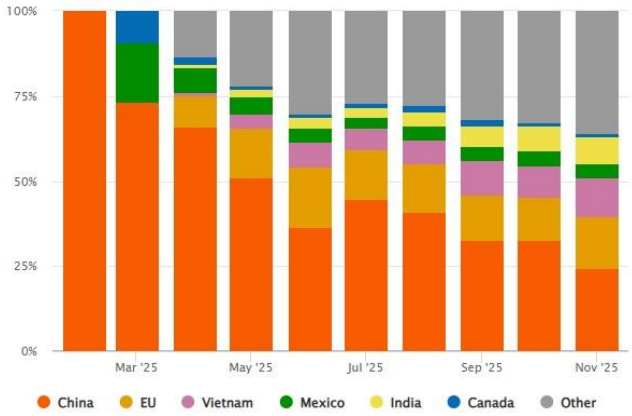

자료: Penn Wharton Budget Model, 하나증권

도표 7. 트럼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 미국의 국내법은 1)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2) 무역수지 적자, 환율 저하 등 국제지급 문제, 3) 타국의 차별, 불공정 행위, 4) 비시장경제국과의 무역 관계, 5) 전시 및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b)** : 대통령이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조사 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또는 쿼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 **1974년 무역법 122조** :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거나 심각한 환율 저하를 발생시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대 15%의 관세 및 쿼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기한은 150일로 제한

- **1974년 무역법 201조** : 특정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판정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또는 쿼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 **1974년 무역법 301조** :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가 다른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보장된 권리를 부정하거나, 부당하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인 행위를 통해 미국 상업을 부담 또는 제한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대해 관세 또는 쿼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 **1974년 무역법 402조** :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 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대통령에게 비시장경제국의 상품을 비차별하는 무역협정 권한을 부여해 조건부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 미국은 1991년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2000년 중국, 2021년 러시아와 몰도바 등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

- **1930년 관세법 338조** : 대통령이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시, 포고를 통해 외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관세 신설 및 추가를 명령할 권한을 인정하는 법안. 이는 미국의 수출에 불합리한 직간접 규제(관세, 거래 금지)를 가하는 국가 또는 미국의 상업 행위에 차별적 대우를 시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까지 관세 부과 가능

- **적성국 무역법(TWEA,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및 1977년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대통령이 전쟁 중(TWEA, IEEPA) 또는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이례적인"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여(IEEPA) 모든 형태의 국제 무역을 규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